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김 윤 · 김현정
박지원 · 김승원 · 임미애
조계원 · 이광희 · 곽상언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‘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’를 열거함.

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. 4. 12.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.

‘부녀(婦女)’는 ‘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’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.

이에 ‘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’의 명칭을 ‘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’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,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”를 “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<u>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</u> 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